

審查結果報告書

— '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 —

産業.建設委員會

'96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요망 진정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진정일자 및 진정인 : '96. 2. 7 (문 희 남)

나. 회 부 일 자 : '96. 2. 24 (의 장)

다. 상 정 일 자 : '96. 2. 26 (제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2. '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요지

가. 선정경위설명자 : 산업과장 양 정 희

나. 선정경위

○ 관광농원 사업자 신청 10개소

(춘양 1, 청풍 1, 이서 2, 북면 1, 남면 2, 동면 3)

○ '96. 1. 26 농어촌 발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 10명중 1명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 춘양석정의 문희남 농장과 이서인계의 김양환 농장은 현지 농원개발이 잘 되어 있고 이서 인계의 김영철과 동면 경치리의 최갑열 농장은 개발의욕이 엿보임.

○ 춘양석정의 문희남 농장과 이서인계의 김양환 농장은 자력개발이 가능할 것 같으니 이서 인계 김영철 농장과 동면 경치 최갑열 농장중 선택을 제의

○ 개발이 잘 되고 있는 춘양 석정 문희남 농장을 개발하자는 제의

○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니 심사표에 의거 평점을 실시 집계한 결과 이서 인계 김영철 농장이 1순위로 확정 선포 됨.

○ '96. 1. 29 화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춘양 석정 문희남의 관광농원 신청 및 선정에 따른 의견을 들었는데 잘못됐다면 다시 선정하자는 제의

○ 분과위원회의 현지확인 실시후 심사 선정한 안대로 결정하자는 제의

○ 이서 인계의 2개 농가신청에 대하여 묶어서 1개의 관광농원개발 제의

- 위원장으로부터 '96. 1. 26 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를 요구하였으며 두가지 안을 표결에 붙임 첫째 분과위원회의 심의대로 결정하자는 안과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전위원이 표결하는 안을 표결결과 분과위원회의 심의대로 결정하자는 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안대로 결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96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에 따른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업 통합 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834호)에 의거 심사선정 하였는바, 심사위원들 심사과정에서 다소 견해차이는 있었지만 선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농수산부 훈령 834호 농림수산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거 선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음.